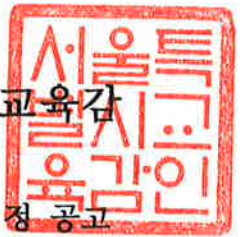


「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공사」 안전점검 수행 전문기관 지정 공고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6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·제100조·제100조의2, 「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」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22. 5. 4.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



1. 공 고 명 :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공사」 안전점검 수행 전문기관 지정 공고

2. 시 공 사 : 진흥기업 주식회사 대표 박상신(현장대리인 김철근)

3. 공고기간 : 2022. 5. 4.(수) ~ 2022. 5. 10.(화)

4. 점검개요

가. 대지위치 :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168번지 일대

나. 수행과업 : 정기안전점검, 초기안전점검

다. 수행기간 : 착수일 ~ 2024년 8월(공정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
※ [붙임1] 시공사 예정공정표 참조

라. 안전점검 주요내용

-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1호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*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른 정기안전점검

* ① 건축물, ② 10미터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, ③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, ④ 건설기계[천공기(높이 10미터 이상), 타워크레인], ⑤ 가설구조물(높이가 31미터이상인 비계,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,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, 현장 조립 복합가설구조물)

-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점검(준공 전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)

-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및 횟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(국토교통부고시 제2021-1087호)에 따름

5. 정기안전점검 계상금액 : 95,700,000원(부가가치세 포함, 보고서 작성비용 포함)

6. 참가자격 (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)

가.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

나.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공사 안전점검 수행 전문기관」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

7. 접수기간 및 방법

가. 접수기간: 2022. 5. 4.(수) ~ 2022. 5. 10.(화) 18:00까지

나. 접 수 처: 서울특별시교육청 8층 교육시설안전과 주무관 성동훈(☎02-399-9654)
[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]

다. 접수방법: 우편접수 및 이메일

※ 등기우편인 경우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

※ 제출서류 PDF 파일 이메일 송부(ssanail129@sen.go.kr)

라. 제출서식 : [붙임2] 참여신청서(양식 1 ~ 3) ☞ 등기우편 접수

마. 제출서식 증빙서류 ☞ 담당자 이메일 접수

-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, 사업자등록증
-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
-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(참여기술인 표시)
- 안전점검 수행실적 증빙서류(최근 3년 건축분야 수행실적에 한함)
- 신용평가등급 확인서(수행기관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)
- 용산구 소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실적 증빙서류(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)

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(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2-131)시 제출한 서류와 변경사항 없는 항목은 제출 생략 가능

8.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

가. 평가방법 :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[붙임3]

나. 업체선정

- 수행기관 평가 결과 고득점 업체로 선정하며,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 가격이 낮은 업체로 지정
- 제출업체가 1개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

9. 기타 유의사항

가. 참여신청서는 기한 내 접수에 한함(기한 내에 접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)

나.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

- 판명될 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 취소
- 다. “나” 항에 의해 발주처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 취소 시 차순위 업체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
- 라.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7일 이내 건설업체와 계약을 하여야 하고,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차순위 업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
- 마. 안전점검 금액은 안전관리계획서상 산출된 금액으로 향후 시공자와 협의 및 계약 시 변동될 수 있음
- 바. 제출양식 내용 및 확인증명 서류의 판단해석 등에 차이 발생 시 발주처 의견에 따름
- 사. 수행기관 평가서는 1부 제출하고,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아.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는 접수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업무방 게시

- 붙임 1. 시공사 예정공정표 1부.
2. 참여 신청서 1부.
3.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. 끝.